

소방방재청고시제 2006-31 호

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준(NFSC 303)  
誘導灯および誘導標識の火災安全基準(NFSC 303)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피난설비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1 条(目的) この基準は、避難設備である誘導灯及び誘導標識の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제 2 조(적용범위) “법”이라 한다) 제 9 조제 1 항 및 동법률시행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 4 호의 규정에 따른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第 2 条(適用範圍) 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以下“法”という。)第 9 条第 1 項および同法律施行令(以下“令”という。)別表 4 避難設備の消防施設適用基準欄第 4 号の規定によ誘導灯及び誘導標識は、この基準で定める規定により設備を設置して、維持、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3 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第 3 条(定義) この基準で使う用語の定義は、次のとおりである。

1. “유도등”이라 함은 화재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1. “誘導灯”とは、火災時に避難を誘導するための灯として定常状態では常用電源により点灯させ、常用電源が停電になる場合には、非常電源で自動転換されて点灯する灯をいう。

2. “피난구유도등”이라 함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2. “避難口誘導灯”とは、避難口または避難経路で使われる出入口を表示して避難を誘導する灯をいう。

3. “통로유도등”이라 함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3. “通路誘導灯”とは、避難通路を案内するための誘導灯で、廊下通路誘導灯、居室通路誘導灯、階段通路誘導灯をいう。

4. “복도통로유도등”이라 함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4. “廊下通路誘導灯”とは、避難通路になる廊下に設置する通路誘導灯として避難口の方向を明示するものをいう。

5. “거실통로유도등”이라 함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5. “居室通路誘導灯”とは、居住、執務、作業、集会、娯樂その他にこれと類似の目的のために継続的に使う居室、駐車場など開放された通路に設置する誘導灯で避難の方向を明示するものをいう。
6. “계단통로유도등”이라 함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6. “階段通路誘導灯”とは、避難通路になる階段や傾斜路に設置する通路誘導灯で床面および歩み床面を照らすものをいう。
7. “객석유도등”이라 함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7. “客席誘導灯”とは、客席の通路、床または壁に設置する誘導灯をいう。
8. “피난구유도표지”라 함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8. “避難口誘導標識”とは、避難口または避難経路で使われる出入口を表示して避難を誘導する標識をいう。
9. “통로유도표지”라 함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9. “通路誘導標識”とは、避難通路になる廊下、階段などに設置することとして、避難口の方向を表示する誘導標識をいう。

제 4 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第 4 条(誘導灯および誘導標識の種類) 消防対象物の用途別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誘導灯および誘導標識は、次表により応じて適応する種類のもの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설 치 장 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가. 공연장·집회장·관람장·운동시설 ア 公演会場、集会場、観覧場、運動施設	○대형피난구유도등 大型避難口誘導灯 ○통로유도등 通路誘導灯 ○객석유도등 客席誘導灯
나. 위락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관광숙박시설·의료시설·통신촬영시설·전시장·지하상가·지하철역사 イ 慰安施設、販売施設および営業施設、観光宿泊施設、医療施設、通信撮影施設、展示場、地下商店街、地下鉄駅舎	○대형피난구유도등 大型避難口誘導灯 ○통로유도등 通路誘導灯
나. 일반숙박시설·오피스텔 또는 가옥 및 나목외의 지하층·무창층 및 11 층 이상의 부분 ウ 一般宿泊施設、オフィスビルまたはアの地階、無窓階および11階以上の部分	○중형피난구유도등 中型避難口誘導灯 ○통로유도등 通路誘導灯
라. 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중고집회장·교육연구시설·공장·창고시설·교정시설·기숙사·자동차정비공장·자동차운전학원 및 정비학원·가옥 내지 다목외의 다중이용업소 エ 近隣生活施設、老幼子施設、業務施設、宗教集会場、教育研究施設、工場、倉庫施設、矯正施設、寄宿舎、自動車整備工場、自動車運転学院および整備学院、アないしウ以外の多目的利用所	○소형피난구유도등 小型避難口誘導灯 ○통로유도등 通路誘導灯

마. 그 밖의 것 オ その他のもの	○피난구유도표지 避難口誘導標識 ○통로유도표지 通路誘導標識
비고 :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備考: 消防署長は、消防対象物の位置、構造および設備の状況を判断して、大型避難口誘導灯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場所に、中型避難口誘導灯または小型避難口誘導灯を、中型避難誘導灯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場所に小型避難口誘導灯を設置するようにすることができる。	

제 5 조(피난구유도등) ①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第 5 条(避難口誘導灯) ① 避難口誘導灯は、次の各号の場所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1. 屋内から直接地上に通じる出入口およびその付室の出入口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直通階段、直通階段の階段室およびその付室の出入口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3. 第 1 号および第 2 号の規定による出入口に通ずる廊下または通路に通じる出入口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4. 安全区画された居室に通じる出入口

②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避難口誘導灯は、避難口の床から高さ 1.5m 以上の所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피난구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避難口誘導灯の照明度は、避難口から 30m の道路で文字および色彩を簡単に識別できるもの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6 조(통로유도등) ① 통로유도등은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설치기준)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第 6 条(通路誘導灯設置基準) ① 通路誘導灯は、消防対象物の各居室とそれから地上に達する廊下または階段の通路に、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廊下通路誘導灯は、次の各目の基準により設置すること。

- 가. 복도에 설치할 것  
ア 廊下に設置すること。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

イ 曲がり角および歩行の距離 20m ごとに設置すること。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ウ 床から高さ 1m 以下の位置に設置すること。ただし、地階または無窓階の用途が卸売市場、小売市場、旅客自動車ターミナル、地下駅または地下商店街である場合には、廊下、通路中央の部分の床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エ 床に設置する通路誘導灯は、荷重により破壊されない強度のものとする事。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居室通路誘導灯は、次の各目の基準により設置すること。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ア 居室の通路に設置すること。ただし、居間の通路が壁体などで区切られた場合には、廊下通路誘導など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ナ.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

イ 曲がり角および歩行の種 20m ごとに設置すること。

ナ.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ウ 床か高さ 1.5m 以上の位置に設置すること。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3 階段通路誘導灯は、次の各目の基準により設置すること。

가.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 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 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ア 各階の傾斜路場または階段場ごとに(1 階に傾斜路場または階段場が 2 以上ある場合には 2 個の階段場ごとに)設置すること。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イ 床から高さ 1m 以下の位置に設置すること。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4. 通行に支障がないように設置すること。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周囲にこれと類似の灯火広告物、掲示物などを設置しないこと。

②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이어야 한다.

② 照度は、通路誘導灯の真下の床から水平で 0.5m 離れた地点で測定して 1lx 以上(床に埋設したものにあっては、通路誘導灯の直上部 1m の高さで測定して 1lx 以上)でなければならない。

③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通路誘導灯は、白色土台に緑色で避難方向を表示した灯で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階段に設置するものにあっては、避難の方向を表示しないこともある。

제 7 조(객석유도등 설치기준) ①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第 7 条(客席誘導灯設置基準) ① 客席誘導灯は、客席の通路、床または壁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lx 이상이어야 한다.

② 客席内の通路が傾斜路または水平路になっている部分においては、次の式により算出した数(少数点以下の数は 1 と見る)の誘導灯を設置して、その照度は、通路床の中心線で測定して 0.2lx 以

上でなければならない。

설치개수 = 객석의 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 / 4 - 1

設置個數 = 客席の通路の直線の部分の長さ(m) / 4 - 1

③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lx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客席内の通路が屋外またはこれと類似の部分にある場合には、当該通路全体に及ぼすことができる数の誘導灯を設置するものの、その照度は、通路床の中心線で測定して 0.2lx 以上にならない。

제 8 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유도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第 8 条(誘導標識設置基準) ① 誘導標識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1. 階段に設置するものを除いては、各階ごとに、廊下および通路の各部分から一つの誘導標識までの歩行距離が 15m 以下 になる所と曲がり角の壁に設置すること。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非常口誘導標識は出入口上段に設置して、通路誘導標識は床から高さ 1.5m 以下の位置に設置すること。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周囲には、これと類似の灯火、広告物?揭示物などを設置しないこと。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4. 誘導標識は、取付板などを使って簡単に落ちないように設置すること。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避難方向を表示する通路誘導灯を設置した部分においては、誘導標識を設置しないこともある。

③유도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誘導標識は、次の各号の基準に適合した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1.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1. 放射性物質を使う誘導標識は、簡単に破壊されない材質で処理すること。

2.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lx에서 20분간 발광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誘導標識は、周囲照度 0lx で 20 分間発光後、直線距離 20m 離れた位置で普通視力で表示面の文字または矢印などを簡単に識別できることにすること。

3. 유도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3. 誘導標識の表示面は、簡単に變形、変質または変色しないこと。

4. 유도표지의 표시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 lx에서 20 분간 발광후 24m cd/m<sup>2</sup> 이상으로 할 것  
 4. 誘導標識の表示面の照度は、周囲調度 0lx で 20 分間発光後、24m cd/m<sup>2</sup> 以上とすること。

5. 유도표지의 크기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를 것  
 5. 誘導標識の大きさは、次表の基準に従うこと。

종 류	가로의 길이(mm) 横の長さ(mm)	세로의 길이(mm) 縦の長さ(mm)
피난구유도표지 避難口誘導標識	360 이상	120 이상
복도통로유도표지 廊下通路誘導標識	250 이상	85 이상

제 9 조(유도등의 전원) ①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원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第 9 条(誘導灯の電源) ① 誘導灯の電源は、蓄電池また交流電圧の屋内幹線として、電源までの配線は専用でなければならない。

② 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非常電源は、次の各号の基準に準じて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축전지로 할 것

1. 蓄電池とすること。

2. 유도등을 20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2. 誘導灯を 20 分以上有効に作動させることができる容量とすること。ただし、次の各目の消防対象物の場合には、その部分で避難階に通じる部分の誘導灯を 60 分以上有効に作動させることができる容量でなければならない。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 층 이상의 층

ア 地階を除いた階数が 11 階以上の階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イ 地階または無窓階として用途が卸売市場、小売市場、旅客自動車ターミナル、地下駅または地下商店街

③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 67 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配線は、電気事業法第 67 条で定めたものの他に、次の各号の基準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1. 誘導灯の引入線と屋内配線は、直接連結すること。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 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誘導灯は、電気回路に点滅器を設置しなくて、常に点灯状態を維持すること。ただし、消防対象物またはその部分に人がいなかったり、次の各目の 1 に該当する場所として、3 線式配線により常時充電される構造であ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가.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ア 外部光により避難口または避難方向を簡単に識別できる場所

나.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イ 公演会場、暗室などとして語頭なければならない必要がある場所

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ウ 消防対象物の関係であるまたは従事員が主に使う場所

④제 3 항제 2 호의 규정에 따라 3 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는 때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第 3 項第 2 号の規定による 3 線式配線により常時充電される誘導灯の電気回路に点滅器を設置する場合には、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時に点灯さ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1. 自動火災報知設備の感知器または発信機が作動する時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非常警報設備の発信機が作動する時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3. 常用電源が停電になったり、電源線が断線する時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4. 防災業務を統制する所または電気室の配電盤で手動で点灯する時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5. 自動消火設備が作動する時

제 10 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第 10 条(誘導灯および誘導標識の除外) ① 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場合には、避難口誘導灯を設置しない。

1.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1. 底面積が 1,000 m<sup>2</sup>未満である階として、屋内から直接地上に通じる出入口(外部の識別が容易な場合に限る。)
2.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2. 居室各部分から簡単に到達できる出入口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3. 居室各部分から一つの出入口に通ずる歩行距離が 20m 以下で、非常照明灯と誘導標識が設置された居室の出入口
4.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 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出入口が 3 以上ある居室として、その居室各部分から一つの出入口に通ずる歩行距離が 30m 以下である場合には、主な出入口 2 ヶ所以外の出入口(誘導標識が取付られた出入口をいう。)。ただし、公演会場、集会場、観覧場、展示場、販売施設および営業施設、宿泊施設、老幼子施設、医療施設の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② 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場合には、通路誘導灯を設置しない。

1.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1. 曲がらない廊下または通路として長さが 30m 未満である廊下または通路
2. 제 1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 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2. 第 1 号に該当しない廊下または通路として歩行距離が 20m 未満で、その廊下または通路と開いたきめなつた出入口またはその付室の出入口に避難口誘導灯が設置された廊下または通路

③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③ 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場合には客席誘導灯を設置しない

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1. 昼間にだけ使う場所として採光が十分な客席
2.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2. 居室などの各部分から一つの居室出入口に通ずる歩行距離が 20m 以下である客席の通路として、その通路に通路誘導灯が設置された客席

④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④ 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場合には、誘導標識を設置しない。

1. 유도등이 제 5 조 및 제 6 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1. 誘導燈が第 5 条および第 6 条の規定に適合するように設置された出入口、廊下、階段および通路

2. 제 1 항제 1 호·제 2 호 및 제 2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2. 第 1 項第 1 号、第 2 号および第 2 項の規定に該当する出入口、廊下、階段および通路

제 11 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 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 이 없는 범위안에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 11 条(設置・維持基準の特例)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既存建築物が増築、改築、大修繕されたり、用途変更される場合において、この基準が定める基準により当該建築物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誘導燈および誘導標識の配管、配線などの工事が顕著に困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当該設備の機能および使用に支障がない範囲内で誘導燈および誘導標識の設置・維持基準の一部を適用しないこともある。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6 조제 1 항제 1 호다목단서 및 제 9 조제 2 항제 2 호나 목(지하상가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 3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